

배포 일시	2022. 7. 7.(목)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4-201-3538)
		담당자	사무관 이광우 (044-201-4585)
보도일시	2022년 7월 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설계·시공기준 해설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에서 7월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 *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m²이상 건축물 및 목욕장, 기숙사,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되었다.
 - *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덕트설비 등

○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하여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예시 >

<p>[별표 6] 오·배수 및 우수설비의 설계기준</p> <p>3.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p> <p>2.1.6 간접배수와 특수 배수</p> <p>(1) 간접배수 ㉔ 식용 장비와 같은 물 배수관, 모든 회로를 화염기후와 접촉하는 간접배수관이다. ㉕ 간접 배수관은 배수구와의 공간을 부여 물받이 용기에 간접배수를 하고, 물받이 용기는 뜨겁고 및 용기내를 설치하여 간접배수관에 연결한다.</p> <p>(2) 특수 배수 배수관에 하중이나 유격기스를 발생하거나 배수처리과정을 방해하는 부식성 액체나 폐산 또는 기타 유해화학물질은 송진된 채피설치로 완벽하게 차단한 후 유격배수관에 배출시켜야 한다.</p> <p>III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별표 6)</p> <p>1. 기본 해설 및 관련 법규</p> <p>✓ (1)항 간접배수 적용 예</p> <p>(a) 배설고, 우발기가 등 배수구공간</p> <p>(b) 우수통기통 간접하여 설치하는 예</p> <p>(c) 단독 배관하여 근처의 우수통기에 배관하는 예</p> <p>(d) 통유연 기구의 통체를 요해서 배관하는 예</p> <p>(e) 배관배수구</p> <p>(f) 배관배수구</p> <p>(g) 배관배수구</p> <p>(h) 배관배수구</p> <p>(i) 배관배수구</p> <p>(j) 배관배수구</p>	<p>[별표 15]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p> <p>3.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p> <p>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는다면 예외로 할 수 있음</p> <p>✓ (4항1호 ~ 2호) 내부관리 샤프트의 설계 예는 다음과 같음</p> <p>예시 : 2항 1호 ~ 5호, 4항 2호</p> <p>2. 용어</p>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어</th> <th>해설</th> </tr> </thead> <tbody> <tr> <td>내부관리 샤프트</td> <td>샤프트의 규모가 커서 관리자가 샤프트 내에 들어가 유지관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샤프트(해설서 주)</td> </tr> </tbody> </table> <p>2.3 샤프트(계속)</p> <p>(5) 외부관리 샤프트 유지관리 공간 확보</p> <p>외부관리 샤프트의 경우 샤프트 내의 모든 시설을 외부에서 용이하게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p> <p>III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별표 15)</p>	용어	해설	내부관리 샤프트	샤프트의 규모가 커서 관리자가 샤프트 내에 들어가 유지관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샤프트(해설서 주)
용어	해설				
내부관리 샤프트	샤프트의 규모가 커서 관리자가 샤프트 내에 들어가 유지관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샤프트(해설서 주)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